

2011년 리비아 사태와 보호책임(R2P) : 규범의 이행체제 분석

오지혜* 충북대학교

김일수** 충북대학교

논문 요약

본 논문은 2011년 리비아 사태를 보호책임의 이행체제에 적용하여 실제 과정을 검토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 사례의 이행결과를 통해 보호책임 규범의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비아 사태에서 각 이행주체들의 보호책임 이행과정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의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주제어 : 보호책임, 리비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

* 주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탈냉전기에 들어 발생한 테러·민족분쟁·내전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개입이란 명분으로 주권국가에 개입하였다. 그러나 인도적 개입은 주권국가의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충돌하며, 사안에 따라 각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개입과 불개입이 정해지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을 필요로 했는데, 이때 등장한 개념이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다. 보호책임은 내정불간섭 원칙과의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국가에 단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와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인류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보호책임은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와 확산과정을 거치며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2011년 리비아 사태를 보호책임의 이행체제에 적용하여 실제 과정을 검토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 사례의 이행결과를 통해 보호책임 규범의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비아 사태에서 각 이행주체들의 보호책임 이행과정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축책임의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II. 보호책임 규범의 이론적 검토

1. 보호책임 개념의 등장과 확산

냉전체제가 끝난 후 국제사회는 긴장이 와해되고 새로운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으나, 이러한 긍정적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형태의 안보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연속적으로 발생한 민족분쟁·내전·테러 등은 전 지구의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위협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도적 개입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인도적 개입은 사안별로 개입의 온도차가 심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사회는 사안에 따라 과잉 대응을 보이기도 하고 소극적 대응을 취하기도 하는 등 개입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행동양상을 나타냈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는 ‘과잉 개입’이 문제가 되었다. UN 안보리는 UN소말리아활동단(UNOSOM)을 구성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기동부대(UNITAF)를 설치했으나 과잉 개입으로 인해 현지 무장 세력 간 교전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UNITAF는 완전한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되었다(모가미 도시키 2003, 64-65).

반면 1992년 보스니아에서의 인도적 개입은 UN보호군(UNPROFOR)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패하였다. ‘인종청소’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는 데도, UNPROFOR는 적절한 무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인도적 지원 활동에만 집중했다(박정원 2005, 70-71).

UN은 1993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종족 내전이 발생한 르완다에 대해서도 인도적 개입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UN르완다지원단(UNAMIR)의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 실패하였다(김열수 2008, 364). 1999년 발생한 코소보 사태에서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군사개입 거

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UN의 승인 없이 NATO 중심의 인도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냉전 종식 이후 발생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개별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코피 아난(Kofi Annan) UN사무총장은 2000년 밀레니엄 회의에서 국가주권과 충돌하는 인도적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했다(Annan 2000, 5).

국제사회는 캐나다 정부를 중심으로 2000년 9월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를 신설하여 인도적 개입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ICISS는 그 방안으로 2001년 『보호책임(R2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호책임은 위기상황 발생 시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는 인류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개입’ 혹은 ‘간섭’과 같은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했다(Evans 2012).

ICISS가 제시한 보호책임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주권은 책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국가에게 있다. 둘째, 자국민이 반란·내전·억압 혹은 국가실패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해당 주권국가가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은 내정 불간섭원칙에 우선한다는 것이다(ICISS 2001).

이후 보호책임에 관한 개념은 주로 UN을 통해 발전되고 확산되었다. 2004년 『보다 안전한 세계(A More Secure World)』 보고서를 통해 보호책임의 중요성과 적용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기 시작하였고(Annan 2004), 2005년 발간된 UN사무총장보고서인 『보다 큰 자유(In Larger Freedom)』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심화시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로서의 보호책임’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보호책임’을 제시했다(UNSG 2005, 48-49). 2005년 9월 UN세계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2005 세계정상회의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에서는 인

종청소·전쟁범죄·집단살해·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책임과 범죄를 예방할 책임도 강조했다(UNGA 2005, 30).

2009년에는 보호책임 규범의 행동의 측면을 강조한 UN사무총장보고서『보호책임 이행(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이 발간되었다(UNGA 2009). 2010년에는『조기경보와 평가 및 보호책임(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2011년에는『보호책임 이행에 있어서 지역과 하위지역 협의체의 역할(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에 관한 UN사무총장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보호책임 규범 확립을 위한 이론적·실질적 노력이 지속되었다(UNGA 2010 ; UNGA 2011).

보호책임의 개념을 공고히 하고 이를 규범으로 확립하기 위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벨라미(Bellamy)는 보호책임 원칙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것이 오용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보호책임 규범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합의를 위해서는 예방의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실제적 조치에 관한 합의를 발전시키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보호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ellamy 2009).

아버(Arbour)는 보호책임의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로서 국제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공동체에 의한 보호책임은 정당하며, UN과 그 산하기구들이 국제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의 메커니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Arbour 2008).

글랜빌(Glanville)은 현재까지의 보호책임 규범은 국제적 성명을 통한 법적 효력에 불과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법위원회의 국민의 치외법권에 관한 법적 의무 선언으로 인해 보호책임의 국제법적 지위가 공고하게 될 것이라 역설했다(Glanville 2012).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리비아 사태와 관련한 보호책임 논의도 이루어졌다. 매드슨(Madsen)과 셀스백(Selsbaek)은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법적 권한과 UN 결의안 분석을 통해 리비아에 대한 개입이 타

당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개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Madsen & Selsbæk 2013).

오셔(O'Shea)는 리비아 사태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안 1973호가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군사적 개입을 둘러싸고 일어난 지지 측과 반대 측의 논란을 분석하였다(O'Shea 2012). 벨라미와 윌리엄스(Williams)는 지난 10년 간 국제사회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보호 정치가 등장했으며,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새로운 보호 정치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Bellamy & Williams 2011)

현재까지의 리비아 사태와 관련한 보호책임 연구는 군사적 개입에 관한 연구, 일부 주체에 관한 연구, 대응과정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수정·보완하여 보호책임 규범의 전체적인 '이행체제'에 초점을 두고 리비아 사태를 분석할 것이다. 보호책임 이행체제의 각 단계 및 각 주체 별 이행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도출되는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활동이 이행체제가 제시하는 적용근거와 이행원칙에 적합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호책임이 인도적 개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록 하겠다.

2.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제

보호책임 개념은 ICISS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제 규범이란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적절한 행동의 기준을 의미한다(김현 2013, 160). 보호책임이 국제 규범화되면서 이행체제도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보호책임의 주요 이행체제로는 적용근거, 이행주체, 이행단계, 강제적 보호책임의 결정권한 및 이행원칙을 들 수 있다.

국제적 안보위기 상황에서의 보호책임 규범 이행을 위한 첫 단추는

보호책임이 적용될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한다. 보호책임 이행을 위한 적용근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된다. 보호책임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보호책임의 적용근거는 내전·폭동·반란 등의 인위적 소요를 포함하여 기아·질병·자연재해·재난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면 보호책임을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5조에서 명시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집단살해(genocide)·인종청소(ethnic cleansing)·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전쟁범죄(war crimes)의 경우에만 보호책임이 적용된다고 본다. 실제로 통용되는 보호책임의 적용근거는 보통 협의적 측면으로 이해된다. 보호책임 개념이 보다 구체화 된『2005 세계정상회의결과문서』와 2011년『보호책임 이행에 있어서 지역과 하위지역 협의체의 역할』보고서에서도 이 네 가지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시에 보호책임이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UNGA 2005, 30 ; UNGA 2011, 2).

인도적 개입의 경우 국제공동체 혹은 제3의 국가만이 개입의 주체로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보호책임 규범은 ‘국제공동체’ 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진 ‘주권국가’ 역시도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주권국가’가 보호책임의 일차적 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국제공동체’는 이차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보호책임 규범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예방책임(responsibility to prevent), 대응책임(responsibility to react), 재건책임(responsibility to rebuild)이 바로 보호책임을 구성하는 세 단계이다. 그동안 인도적 개입은 주로 안보위기 사태 발생 후의 ‘대응’의 과정만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보호책임은 사전의 ‘예방’과 대응 단계 이후의 ‘재건’ 역시 중요한 과정으로 바라본다.

예방책임의 단계에서는 주권국가와 국제공동체가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실패하게 될 경우 대응책임의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대응책임은 급박

한 인간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이행’이 어느 단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계이다(이규창 외 2012, 57). 이 때 보호책임을 위한 대응은 ‘시의적절하고 단호하게(timely and decisive)’ 이행되어야 한다(UNGA 2009, 22). 마지막 단계는 재건축임 단계이다. 재건축임은 인도적 개입 이후 해당 지역의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해결에 실패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고안된 단계이다. 재건단계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와 사회회복, 화해, 인프라 재건 등을 이행한다. 재건은 결국 분쟁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단계의 특징도 갖는다(이규창 외 2012, 68).

한편 보호책임의 이행체제에서 별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강제적·무력적 성격의 보호책임 이행이다. 과거 인도적 개입의 경우에도 강제적인 군사개입은 국가주권과의 충돌, 내정불간섭 원칙 등으로 늘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보호책임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로마규정’ 제5조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네 가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 책임자인 해당 주권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내정 불간섭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차적 책임자인 국제공동체가 책임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박기갑 외 2010, 69).

또한 보호책임은 강제적인 군사적 이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차적인 결정권한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게 부여하였다. UN 헌장 제5장 제24조에 따르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UN 안보리가 강제적 수단의 보호책임 이행을 결정할 가장 적합한 기관임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UN 안보리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강제적·무력적 수단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적인 보호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이행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ICISS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원칙으로는 정당한 의도(right intention), 최후의 수단

(last resort), 수단의 비례성(proportional means), 합리적인 성공가능성(reasonable prospects)이 전제되어야 한다(ICISS 2001). 이 원칙들이 부합했을 때에만 국제공동체는 강제적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¹⁾

Ⅲ.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규범 이행체제 분석

1. 리비아 사태의 발발과 보호책임 규범 적용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1969년 무혈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최고통치자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에 의해 40년 이상 통치되어온 독재국가였다. 2010년 말,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튀니지에서 23년간 장기 집권 중인 벤 알리(Ben Ali) 정권에 반대하며 ‘재스민혁명(Jasmin Revolution)’이라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반정부 혁명은 주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 불리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면서 아랍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카다피가 통치하는 독재국가였던 리비아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카다피에 대한 반정부 시위는 2011년 2월 15일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벤가지(Benghazi)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카다피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고 인명피해가 급증하게 되었다. 카다피 정권의 과도한 유혈 진압은 정부 일부 고위관리와 해외주재 외교관 등의 이탈을 불러 일으켰으며, 2월 26일에는 리비아 법무장

1) 보호책임에 대해 다룬 ICISS 및 UN의 보고서들은 강제적 보호책임 이행원칙을 비슷하면서도 일부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다. 2003년 UN고위급패널 결과로 2004년 발간된 『보다 안전한 세계(A More Secure World)』 보고서에서는 무력 행사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위협의 심각성(seriousness of threat), 적절한 목적(proper purpose), 최후의 수단(last resort), 수단의 비례성(proportional means), 성공에 대한 합리적 전망(reasonable chance of success)을 제시하고 있다.

관직에서 사임한 잘릴(Mustafa Abul Jalil)이 의장직을 맡은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가 설립되었다.

리비아의 내부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UN 안보리는 리비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처음으로 보호책임(R2P) 규범을 적용하였다. 2011년 2월 26일 UN 안보리는 “리비아 국민을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에 대해 공표하며 결의안 1970호를 채택하였다. 결의안 1970호에 의해 우선적으로 리비아에 대한 비군사적인 제재조치가 진행되었다(UN Doc 2011a).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UN 안보리는 3월 17일 결의안 1973호를 채택하면서 군사적인 제재조치를 승인하였고, 이틀 뒤인 19일부터 국제사회의 다국적군에 의한 군사 개입이 시작되었다(UN Doc 2011b).

NATO는 UN의 위임을 받고 공군력을 중심으로 공격을 이어갔으며, 결국 카다피 정부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리비아에서의 내전은 몇 달간의 공방이 지속되다가 결국 그 해 8월 반(反) 카다피 세력이 수도인 트리폴리를 함락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9월에는 반 카다피 세력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가 UN에 의해 리비아의 합법 정부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했다. 40년 이상을 유일무이 독재자로 군림하던 카다피는 10월 20일 자신의 고향 시르트 지역에서 발각되어 반군에 의해 사살되었고, 10월 31일 UN이 무력 제재조치를 공식 종료하면서 2011년의 리비아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보호책임 규범이 공식적으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이다. UN 안보리는 결의안 1970호와 1973호를 채택하면서 “리비아 국민을 보호할 책임”에 대해 명확히 명시했다.

2.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과정

리비아 사태에 대한 보호책임 이행과정은 예방, 대응, 재건단계에서
의 주권국가와 국제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국제공
동체의 행위는 대응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리비아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리비아 사태에서의 국제공동체
의 예방책임은 이미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일차적 책임자인
리비아 당국은 대응단계에서 자국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수행하기 보
다는 인권학살과 국가폭력을 잔인하게 행하고 있었기에, 주권국가에 의
 한 대응책임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예방책임 이행단계

예방책임 단계는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기 전, 보호책임 이
 행주체들에 의해 사전 예방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예방작업은 그 국가에 대한 구조적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데서
 시작된다. ICISS는 예방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근본원인을 정치적·외교
적·경제적·법적·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ICISS
 2001, 23). 특히 이는 국제공동체보다도 일차적 책임자인 주권국가가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다.

리비아의 정치체제는 카타피의 정치철학을 따른 ‘자마히리야(Jamahiriya)’
 라는 독특한 체제로 이루어졌다. 이 체제에 의하면 대의제도는 시민들
 의 진정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초인민회의(Basic
People’s Congress)라는 지방자치조직을 통해 인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했다. 또한 모든 기초인민회의의 대표
 기관으로서 총인민회의(General People’s Congress)라는 최고 의결기
 관을 설립하여 입법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자마히리야 정치체제는 사실상 카다피의 권력집중을 위해 악
용된 도구로 기능했다. 실제 입법 기능은 카다피를 비롯한 최고 권력기

관이 통제했기 때문에 총인민회의를 통한 입법 활동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또한 카다피 정부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제한되어 있어 총인민회의의 활동은 권력층의 정책을 승인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카다피 정권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당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1972년에 정당금지법을 제정하여 리비아 내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시켰고,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조직 행위를 반역죄로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카다피 정권의 권력은 카다피 친인척 및 카다파 부족 출신들, 혁명참여 인사들이 주로 차지하였다.

리비아의 기본적 법제는 시민법과 이슬람법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헌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법기관은 형식적으로 행정기관과 분리되어 있긴 했으나, 정권을 위협하거나 반정부 인사 대상으로는 재판 없는 구금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카다피 지도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 많았다. 즉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사법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카다피의 이상에 기초한 자마히리야 정치체제는 실제로는 카다피 정권의 권력집중 및 공고화를 위한 정치도구로서 악용되어 왔으며, 실제 리비아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를 위한 체제로서는 기능하지 못했다(황병하 외 2011, 41-59).

리비아의 경제체제는 주로 석유산업에 의존했다. 리비아는 세계 최대 석유매장 국가 중 하나이며 1960년대부터 석유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0년 리비아의 GDP에서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이었으며, 리비아 수출의 95% 이상, 정부 세입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홍미정 2017, 59).

카다피 정부는 집권 초반, 대중적 지지를 얻고 집권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석유 수출로 인해 얻은 막대한 부를 주택공급, 보조금, 차량 무상 제공 등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고자 했다. 그러나 오랜 독재기간이 흐르면서 카다피 정권은 석유 수익을 리비아의 경제성장이나 국내적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후견인 양성 등 자신의 권

력 공고화를 위해 악용했다. 또한 지역 간 차별 정책으로 인해 수도 트리폴리 중심의 서부지역은 개발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카다피 정권의 반발 세력이 주로 거주하던 동부지역에 대한 개발에는 소홀했다.

1970년대 이후로는 민간 은행들을 국영화하여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였고 리비아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가 직접 기본적 소비재의 배분을 담당하였다. 국가에 의한 배분은 당연히 권력층에 부를 집중시켰고 빈부 격차라는 문제를 낳았다. 자원이 재분배 되지 않으면서 리비아 사태 직전 빈곤층은 전체의 40%에 달했고, 일자리 창출 문제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아져 갔다(황병하 외 2011, 47-64).

리비아의 사회구조는 부족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리비아에는 약 140여개의 부족이 존재하며, 카다피는 비교적 소수부족인 카다파(Qadafa) 부족 출신이다. 카다피는 정권유지를 위해 일부 부족과 동맹을 맺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족 차별정책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특히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던 부족들은 카다피 정권이 이 지역출신 부족들을 의도적으로 소외시켜왔다고 믿었으며, 실제 카다피 정부도 동부 부족들을 반정부를 선동하는 불순 세력으로 간주해왔다. 이처럼 리비아 내 부족 차별정책은 부족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켜왔고, 이는 리비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황병하 외 2011, 55-7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카다피 정권이 이룩해 온 리비아 사회의 전반적인 체제는 분쟁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위협요소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 2011년 2월 리비아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면서 내전은 시작되었고, 카다피 정부는 자국민을 향한 무차별적 학살을 시작했다. 이는 주권국가에 해당하는 카다피 정부가 리비아 국민의 보호를 위한 예방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대응책임 이행단계

주권국가와 국제공동체의 예방책임 단계가 실패하게 되면 이후 대응책임 단계에 진입한다. 대응책임 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주권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지만, 주권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능력 혹은 의지가 없을 경우 국제공동체가 이차적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리비아 사태의 경우에도 리비아 당국의 보호책임을 위한 대응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제공동체에게 대응책임 임무가 부과되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여가 일어났다. 리비아 사태에 대응한 국제공동체는 크게 두 기구로 나눌 수 있다. 바로 ‘UN’과 ‘지역기구’이다.

UN의 대응책임 이행 활동은 UN 안보리의 비군사적·군사적 제재조치 이행, UN 총회와 UN 사무총장에 의한 카다피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 조성 및 정당성 약화, UN 인권이사회회의 인권침해 조사 및 책임자 규명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UN 안보리는 강제적·무력적 보호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UN 안보리는 리비아 사태에 직면하여 두 차례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대응책임을 다했다. 2011년 2월 26일 UN 안보리는 처음으로 보호책임 규범을 적용한 결의안 1970호를 15개 안보리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했다. 따라서 리비아 사태 관련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대(對) 리비아 무기수출금지, 카다피 정권 핵심 인사의 여행금지, 자산동결 등의 조치가 행해졌다(UN Doc 2011a).

그러나 리비아에서는 여전히 인권유린 사태와 각종 분쟁이 지속되었다. 이에 UN 안보리는 2011년 3월 17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을 허가하는 결의안 1973호를 채택하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본격적인 책임활동을 수행했다(UN Doc 2011b). 3월 19일부터 다국적군 및 NATO에 의한 리비아 군사 작전이

수행되었다. 리비아에서의 군사적 조치는 새로운 리비아 정부가 수립되고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2011년 10월에 종료되었다.

UN 총회와 UN 사무총장도 리비아에 대한 대응책임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2011년 3월 1일에 열린 UN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을 공격하는 리비아 정부는 각국의 인권상황을 감시할 자격이 없다고 밝히며 UN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것을 결의했으며(UN Doc 2011c ; UN Doc 2011d), 내전이 종식되기 전인 9월 16일에는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를 리비아 대표로 인정하여 카다피 정부를 대신해 의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UN Doc 2011e).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리비아 사태 초기부터 카다피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리비아에 대한 보호책임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얻어내고자 노력했다.

UN 인권이사회도 리비아에서의 대응책임을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2011년 2월 25일 UN 인권이사회는 리비아에서 나타난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들을 조사할 목적으로 ‘리비아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했다(UN Doc 2011f). 리비아 조사위원회는 현지에서의 조사를 통해 두 차례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UNHRC 2011 ; UNHRC 2012), 특히 두 번째 보고서에서 카다피 군대에 의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살인·고문·강제실종·성적 폭력을 확인했으며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가 행해졌다고 평가했다. 조사위원회는 반(反) 카다피 군에 의해서도 무분별한 공격과 약탈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다. 리비아 조사위원회는 리비아 사태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결국 2012년 2월 경 41명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 공헌했다(UNHRC 2012, 19-21).

리비아 사태 대응책임에 있어서 지역기구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리비아가 속해있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두 지역기구인 아랍연맹(AL)과 아프리카연합(AU)은 리비아 사태의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랍연맹은 리비아 사태 발발 직후부터 리비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

하기 시작했다. 2011년 2월 22일에 ‘리비아가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아랍 연맹 및 연맹의 산하 기구 회의에 참석을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리비아 정부의 인권학살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아랍연맹은 단순 성명에 그치지 않고 3월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비상회의를 개최한 후 리비아 사태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했다(Arab League 2011).

사실 아랍연맹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기구이다. 아랍권 국가들 대다수가 오랜 독재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아랍연맹의 대응책임 노력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랍연맹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된 데에는 2011년 3월 12일에 열린 아랍연맹 비상회의가 미국을 지지하는 걸프협력회의(GCC) 참여 국가들의 주도로 열렸기 때문이다(Bellamy & Williams 2011, 841-842).

아프리카연합 역시 리비아 사태에 대한 대응책임을 이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연합의 행보는 아랍연맹보다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아프리카연합은 카다피 정부의 자국민 학살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으나, UN 안보리 결의안 1973호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즉 결의안이 승인한 ‘비행금지구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사적 개입에는 반대하며 리비아의 영토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U Doc 2011).

리비아 사태에서 아프리카연합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카다피 정권과의 직접 대화 시도를 통한 갈등 중재였다. 사실 리비아는 아프리카연합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 중 하나였다. 아프리카연합 자체가 카다피의 주도로 설립이 되었고, 아프리카연합의 예산 중 약 15%를 리비아가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연합은 다른 기구보다 카다피 정권과의 대화에 수월한 이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카다피 정권과의 모든 회의를 거부한 아랍연맹과 달리, 아프리카연합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카다피가 보낸 정부 대표단을 회담에 참여시켰다. 또한 아프리카연합 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카다피 측과의 협

상을 진행했고, 중재안을 마련하여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카다피 정권은 학살을 멈추지 않았으며, 반군 역시 카다피 체제가 유지되는 한 타협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프리카연합의 중재는 무산되었다.

이처럼 대응책임 단계에서는 여러 국제공동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대응책임을 이행했다. UN 안보리는 리비아 사태가 발생한 지 10여일 만에 비군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20여일 후 군사적 대응을 수행했다. 이는 보호조치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UN총회와 UN 사무총장은 주로 카다피 정권의 정당성 약화와 국제사회 비판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이끌어 보호책임 대응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리비아 사태를 대하는 UN 인권이사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카다피 진영뿐만 아니라 반(反)카다피 진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아랍연맹과 아프리카연합과 같은 지역기구의 적극적인 관여는 국제공동체의 대응책임 이행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제공동체의 대응책임의 결과, 카다피 정권은 붕괴되었고 리비아에는 새로운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3) 재건축책임 이행단계

재건축책임은 보호책임의 마지막 단계로서, 분쟁 지역에 대한 대응 이후 그 지역의 사회 재건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시기이다. 재건축책임 이행 역시 일차적 책임자는 주권국가에게 있고, 국제공동체는 이차적 책임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재건축책임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주권국가에게 재건의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건축책임은 국제공동체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리비아 사태가 종료된 직후, 반군의 선봉에 섰던 리비아 국가과도위

원회(NTC)가 국제사회로부터 리비아의 대표로 인정받게 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이 이들에게 주어졌다.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새 정권수립에 착수했으며, 11월에는 알 키브(Al Keeb) 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과도정부 내각이 출범했다. 헌법 초안 마련을 위해 2012년 7월 처음으로 리비아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제헌의회(GNC)가 구성되었으며, 2014년 2월에 새로운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리비아 당국은 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사회 인프라 재건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정유시설·주택·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 약 1,200억 달러, 자동차·가전제품 등 상품 수입에 약 1,500억 달러, 방산 분야에 약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박유정 2012, 60). 이처럼 사태 직후 새 리비아 당국은 리비아를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 민주정권 수립 시도, 법과 제도 제정, 인프라 구축 등의 재건축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제공동체 역시 리비아에 민주주의 국가 수립, 사회 인프라 구축, 경제발전 등과 같은 재건축임의 과제가 부여되었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재건축임은 주로 책임자 처벌, UN 리비아지원임무단(United Nations Support Mission in Libya, 이하 UNSMIL)을 통한 리비아 재건 지원으로 행해졌다.

리비아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인권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 선행되었다. UN 안보리 결의안 1970호는 리비아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로 회부하였고, ICC는 카다피와 그의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일가친척 중 한 명인 압둘라 알 세누시 군정보국장을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이프 알 이슬람은 ICC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알 세누시의 경우 리비아 국내재판이 이루어졌다(조정현 2011, 39).

리비아 사회의 본격적인 재건을 위한 UN의 활동은 UNSMIL의 파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UNSMIL은 UN 안보리 결의안 2009호를 통해 처음 결성되었다. UNSMIL은 리비아 공공의 안전회복 및 법치주의 강화,

정치적 합의 및 국내화해, 헌법제정 및 선거절차 착수, 국가의 권위 확대 및 공공 서비스 회복, 인권증진 및 사법정의 지원, 경제 회복 등의 임무를 맡게 되었고 2011년 10월 31일 첫 파견이 이루어졌다(UN Doc 2011g). 이후 UN 안보리는 결의안 2022호(2011년), 2040호(2012년), 2095호(2013년), 2144호(2014년), 2238호(2015년), 2323호(2016년), 2376호(2017년)를 채택하며 UNSMIL의 임무기간을 연장하고 권한을 확대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결의안 2434호(2018년)가 통과되어 UNSMIL의 활동기간은 2019년 9월까지 확대되었다.

UNSMIL은 리비아의 새로운 국가 수립을 위해 선거 전문가 파견 및 기술적 조언·여성 후보자에 대한 전략 회의·선거 방송 훈련 등을 제공하였다. 인권 및 사법 정의 부분에서는 혁명 가담 억류자들의 기소 및 카다피 정권 고위 관료 재판에 도움을 주었다. 안보와 관련해서도 UNSMIL은 국가안보 체제와 거버넌스 구성에 조언을 제공했으며 혁명군 및 카다피 정부군의 무장해제, 국경 안보, 방위체제, 경찰 개혁 등에 참여하였다(UN Doc 201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비아의 상황은 2011년 리비아 사태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리비아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2차 리비아 내전이라 불리는 소요 사태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오히려 2011년 리비아 사태보다도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살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리비아 국내 상황은 결국 새 리비아 당국과 국제공동체의 재건축임 노력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새 리비아 당국과 국제공동체는 사태 직후에는 리비아의 재건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듯 했으나, 그것은 실질적·장기적으로 리비아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였고 따라서 재건축임 이행에는 실패했다. 리비아에서의 재건축임 실패는 결국 제2차 리비아 내전의 발발로 인해 또 다른 예방책임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3.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결과 분석

리비아 사태에서 주권국가와 국제공동체가 이행한 보호책임 활동을 각 단계별로 분석·요약해 보면, 주권국가에 의한 일차적 예방책임의 실패로 인해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였고, 대응책임 단계에서 국제공동체의 비군사적·군사적 개입을 통한 보호책임 이행으로 카다피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주권국가와 국제공동체의 소극적인 재건축책임 이행으로 인해 리비아의 재건은 실패했다.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은 크게 인도주의적, 리비아의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요인이 작동된 결과였다. 국제사회가 대응책임 단계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보호책임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도주의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방책임과 재건축책임 단계에서의 보호책임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리비아의 국내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리비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변수도 리비아 보호책임의 실패에 영향을 주었다.

1) 인도주의적 요인

국제공동체가 대응책임 단계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보호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차적으로 인도주의적 요인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인도주의 목적에 기반을 둔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 이행은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이러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제공동체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대응과정은 보호책임 이행체제가 제시하는 ‘적용근거’와 ‘이행원칙’에 부합했기에 인도주의적 요인에 의한 개입이었다.

국제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보호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규범을 적용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보호책임의 적용근거는 인종청소,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의 네 가지 범죄행위에 해

당한다.

UN 안보리는 결의안 1970호와 1973호에서 보호책임의 적용 근거로 리비아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행해졌음을 밝혔다.²⁾ 실제로 2012년 UN 인권이사회는 리비아 사태에서 수많은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군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수용소에 구금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살인, 구금자들을 상대로 한 잔인한 고문과 학대, 무장 군인들의 여성을 향한 성적 고문 및 성폭행,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등이 카다피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UNHRC 2012, 7-16). 이러한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리비아에 보호책임이 적용될 근거로 작동했다. 이는 인류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보호책임을 이행했던 것이다.

또한 UN 인권이사회는 리비아 당국에 의한 ‘전쟁범죄(war crimes)’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했던 리비아 당국의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 및 살인행위, 여성에 대한 각종 성적 고문 및 성폭행, 전쟁과 관련 없는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등의 행위는 ‘전쟁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UNHRC 2012, 9).

이처럼 리비아 사태 과정 중 리비아 당국에 의해 발생한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각종 행위들은 리비아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적용할만한 중요한 인도주의적 근거로서 작용하여, 국제공동체가 보호책임 이행체제를 수행하는 데 정당성과 당연성을 부여했다.

대응책임 과정에서 국제공동체의 군사적 수단 활용은 반드시 인도주의적 목적에 부합해야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호책임 이행체제는 강제적 보호책임 이행 시 인도주의적 목적의 개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결정권한과 이행원칙을 제시해왔다. 리비아 사태에서는 군사적 개입과 관련한 국제공동체의 대응

2) UN 안보리 결의안 1970호와 1973호에서는 ‘현재 리비아에서 발생하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widespread and systematic attacks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Libyan Arab Jamahiriya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고 명시하였다.

이 그러한 결정권한과 이행원칙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비아 사태에 강제적 성격의 보호책임을 처음 적용하도록 결정한 기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였다. UN 안보리는 결의안 1973호를 통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이는 강제적 보호책임 이행체제가 제시한 올바른 결정권한에 따른 군사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리비아 사태에서의 무력대응은 강제적 보호책임을의 네 가지 이행원칙 즉, ‘정당한 의도’, ‘최후의 수단’, ‘수단의 비례성’, ‘합리적 성공 가능성’에 부합했으며, 이는 리비아에서의 강제적·무력적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인도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이행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강제적 보호책임 이행 시에는 ‘정당한 의도(right intention)’가 필요하다. 정당한 의도란 비록 개입 국가가 다른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강제성 사용의 목적이 ‘인류의 고통을 멈추거나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다자적인 활동과 그 지역에서의 여론이나 관련 희생자들의 지지가 있다면 더욱 정당해진다(ICISS 2001).

리비아 사태에서 국제공동체의 군사적 사용은 정당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사태에서는 강제적 보호책임 이행을 위해 그동안 불법전쟁에 잘 참여하지 않던 벨기에·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 등의 중견국들이 참여하여 다국적군이 구성되어 다자적 활동이 이루어졌으며(이수형 2011, 6), 이는 ‘인류의 고통을 멈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둘째, 강제적 성격의 보호책임은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비군사적 옵션과 평화적 방안이 사용되어야 하고, 이것이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정당한 이유로 작동할 때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사적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ICISS 2001). 리비아 사태에서의 무력사용도 ‘최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UN 안보리는 우선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카다피 정부가 무차별적 공격을 이어가자 결의안 1973호 채

택을 통해 군사적 제재조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셋째, 강제적 보호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단의 비례성(proportional means)’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력사용을 통한 개입 시 그 규모와 강도, 지속성은 인간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로 진행되어야 한다(ICISS 2001). 리비아 사태에서 다국적군 및 NATO군이 ‘최소한도’로 군사적 수단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최소한도’의 수단을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점은 민간인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다. 리비아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NATO는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타격하지 않았으며 민간인의 희생은 일부 제한적으로만 발견되었고, 민간인의 희생을 피하기 위한 정밀타격이 행해졌다고 평가했다 (UNHRC 2012, 16-17). 또한 리비아 주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리비아 영토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금지했던 것도 수단을 ‘최소한도’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합리적 성공 가능성(reasonable prospects)’이 있을 경우에만 강제적 보호책임을 가동해야 한다. 이는 개입을 통해 얻은 결과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얻은 결과보다 악화되어서는 안 되며, 개입을 통해 고통을 멈추거나 피할 것이라는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CISS 2001). 리비아 사태 당시 카다피 정부는 학살을 멈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비군사적 제재조치에도 공격을 이어나갔다. 리비아 당국이 자국민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상황에서 국제공동체의 강제적 조치는 합리적 성공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정리하면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대응책임 이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정당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보호책임의 적용근거에 따른 대응결정과 강제적 이행원칙에 알맞은 군사적 개입은 국제공동체의 대응책임 활동이 인도주의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 국내적 요인

리비아 사태의 보호책임 이행결과, 예방책임과 재건축책임 단계에서의 보호책임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 주요 원인은 바로 리비아의 국내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리비아의 국내적 상황은 예방 및 재건을 위한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여건 하에 있었고 이는 보호책임 이행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예방책임 단계에서 리비아 당국은 정치적·법적·경제적·사회적 부문에서 분쟁을 예방하는데 실패했다.

첫째, 리비아는 정치적·법적 예방책임에 실패했다. 정치적·법적 측면에서 예방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기관 설립 및 역량 강화, 합법적인 권력의 분배, 권력 교체 및 재분배의 중재, 언론의 자유 지원 및 법치주의 확립, 법치 강화 노력, 법집행에 있어 신뢰와 책임 증진, 취약집단 보호강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박기갑 외 2010, 138-139).

카다피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권력 분배 및 교체에 실패했고, 민주주의를 부정했기에 정당 등의 민주적 기관 또한 설립하지 않았으며 입법기관은 존재했으나 이는 카다피의 정책승인 기관에 불과했고, 헌법제정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도 소홀했다. 일가친척 및 충성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석유수출을 통해 얻은 막대한 수입을 독점하는 등 일반 국민이나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통일연구원 2011, 59-61).

둘째, 경제적 예방책임 역시 실패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예방책임은 자원의 재분배 및 기회 창출을 위한 개발 지원 및 협력, 경제발전 지원 및 기회 제공, 필요한 경제구조의 개혁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카다피 정부는 석유수출로 인한 막대한 부를 리비아 경제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자원 재분배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층 독점 혹은 무기 구매 및 테러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2011년 당시 리비아 인구의

40%가 빈곤층에 해당했고, 특히 30세 이하 청년의 실업률이 30%에 달하는 등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권에 대한 불신도 높아져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4-5).

셋째, 사회적 측면의 예방책임 역시 실패했다. 리비아는 140여 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오랜 기간 부족 간의 갈등이 내재된 국가이다. 리비아 정권의 주요 요직 및 권력과 경제적 부는 수 십 년간 카다피 부족이 독점해왔으며(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09-110), 다른 부족에 대한 억압을 지속해, 리비아 사회에서는 부족 간에 장기간에 걸친 억압과 피억압의 기제가 형성되어 왔다(인남식 2011, 249). 당연히 피억압 부족들은 카다피 정권을 향한 강한 적개심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리비아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었다.

한편 리비아의 재건축임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국내적 요인은 모든 리비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의 부재이다. 재건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새 정권이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했으나, 리비아의 새로운 과도정부는 내부 분열로 인해 결국 서부와 동부 기점의 두 개의 정부로 갈라지게 되었다. 2012년 9월에 출범한 제헌의회도 이슬람 세력과 비(非)이슬람 세력으로 양분되는 등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부터는 서부와 동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제2차 리비아 내전이 발발했다. 2014년 리비아 총선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2019년 현재 리비아는 서부 트리폴리 중심의 리비아통합정부(GNA)와 동부 투브루크 중심의 리비아국민군(LNA)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9년 4월부터 또다시 LNA가 GNA를 전복시키고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리비아 국민을 통합하고 단결시키는 공식정부 수립의 실패는 재건축임의 실패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식정부의 부재로 인해 리비아에서는 공식적인 사법체계 및 안보체계, 의회제도 등이 완성될 수 없었고 아직까지도 권력 쟁탈을 위한 무력 분쟁이 지속

중이다. 리비아 국내의 정치적 불안 그리고 이로 인한 내전은 리비아의 경제 및 사회 재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는 재건축임에 있어서 주권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준다.

3) 국제적 요인

국제적 요인 또한 리비아 사태의 보호책임 이행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특히 대응책임과 재건축임 단계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당시 리비아 사태에 관여했던 주요 국가들은 각 이행단계에서 자국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결정을 내렸으며, 각국의 결정이 모여 보호책임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이는 대응단계에서는 국제공동체의 군사적 개입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리비아의 정권이 교체되었다. 반면 재건축단계에서는 소극적 활동으로 인한 리비아 재건 실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리비아 사태의 대응책임 단계에서 국제공동체가 군사적 옵션 사용을 통해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국제적 요인은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체적 여론이 악화되어 있어 이러한 여론에 동조하는 것이 자국의 정치적 입장에 더 유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리비아 사태가 점차 심각성을 띠게 되자, 이것의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리비아에 대한 주요 각국의 대응은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의안 1973호 채택과 관련한 15개국 UN 안보리 표결 결과 10개국은 찬성, 5개국은 기권하였으며, 거부권(veto)을 행사한 국가가 없었기에 결의안은 통과되었다. 물론 강제적 무력행사가 포함된 결의안 1973호 채택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리비아 군사개입의 필요성을 초기부터 강경하게 주장한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다. 두 국가는 그동안 리비아와 석유자원 및 경제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초반부터 리비아에 대한 무력 대응을 주장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카다피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카다피 정권 유지에 기여했다는 국제적·국내적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내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북아프리카 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고 석유이권에 대한 경제적 주도권을 잃지 않으며, 난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리비아에 대한 무력행사를 주도적으로 주창했다(박흥순 2011, 91-92).

미국의 경우 초반에는 군사개입을 망설였으나 결국 최종투표에서 찬성에 표를 던졌다. 사실 리비아가 2003년 WMD를 포기함에 따라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는 상당히 호전된 상태였다. 또한 중동에서의 반미감정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지출에 대한 부담감 등의 이유로 미국은 무력행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리비아에 대한 국제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중동의 아랍연맹조차도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안보리에 요청하자 결국 군사적 수단 활용에 찬성하게 되었다(Bellamy & Williams 2011, 843).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veto)이 아닌 기권을 행사했다. 상임이사국인 두 국가의 이러한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주권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에 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국가가 공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된 비난 여론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줄곧 주권국가에 대한 개입에 반대해 온 아랍연맹과 아프리카연합이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UN 안보리의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두 상임이사국은 쉽사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박동형 2012, 296-298).

이처럼 군사적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 1973호 통과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은 지역기구들의 목소리와 행보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것이 실제 투표 결과에 반영되어 UN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UN 안보리는 거부권 없이 정당하게 강제적 수단의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있었다.

반면 재건축임 단계에서 주권국가와 국제공동체는 효과적인 재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재건축임이 실패한 국제적 요인은 리비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이 서로 상이하여 재건을 위한 일치된 행보를 이어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리비아를 둘러싼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는 현저하게 나뉘어져 있다. 리비아는 UN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부 수도 트리폴리 중심의 GNA와 군벌세력인 동부 LNA로 분열되어 있다. 여기에 각종 민병대와 이슬람 테러단체들이 난입하면서 혼란스러운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GNA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정부로 인정받고 있지만 리비아 국토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이 동부 세력인 LNA가 통합정부에 맞설만한 세력을 길러 리비아 국토의 2/3를 차지하면서 중요한 유전지대 대부분을 손에 넣고 있다.

두 정권을 둘러싸고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따라 지지하는 정부가 다른 실정이다. 미국은 UN이 인정하는 GNA를 합법정부로 간주해왔으나 최근 북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LNA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유가 안정화 및 리비아로의 에너지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채산성이 높은 유전지대를 소유하고 있는 LNA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도 NATO를 견제하고 북아프리카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LNA를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7년부터 LNA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무기를 제공하는 등 영토 확장을 위한 무력 공세에 힘을 보태왔다. 프랑스 역시 LNA를 은밀히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 에너지기업의 리비아 진출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LNA를 지지하는 사우디 및 UAE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을 지지한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잇따른 파리 테러로 인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척결을 앞세우는 LNA를 지원하고 있다.

제2차 리비아 내전은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며 현재까지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로 인해, 양 세력 간의 휴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까지도 주요 강대국들의 리비아에 대한 입장은 각자의 정치적 논리로 일치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리비아에서의 재건책임을 이행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제를 2011년의 리비아 사태를 통해 분석하였다. 리비아 사태의 보호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리비아 사태는 보호책임 규범이 실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었다. 규범은 이론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 적용되고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공고화 될 수 있다. 리비아 사태는 보호책임 개념이 창출된 지 약 10년 만에 처음 실제에 적용된 사례였다. 또한 첫 선례인 만큼 이행되는 과정에서의 정당성이 중요한데, 보호책임이 적용된 근거와 강제적 보호책임을 결정한 권한 및 이행 원칙들이 비교적 잘 준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리비아 사태를 통해 UN과 같은 국제공동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기구 역시 중요한 보호책임 이행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규모 인권학살 사건 발생 시 지역기구 및 주변 국가들의 도움은 중요하다. 주변국과 관련 지역기구들은 해당 사건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사건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UNGA 2011, 3).

리비아 사태에서의 국제공동체의 대응책임은 아랍연맹과 아프리카연합의 관심과 촉구가 없었더라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실제 UN 안보리의 일부 국가들은 이들 지역기구의 영향으로 군사적 개입에 관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리비아 사태를 통해 보호책임 이행주체로서의 지역기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향후 보호책임 적용 사례 발생 시 지역기구와의 협력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리비아 사태 재건책임 이행과정에서 실제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한 것은 향후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보호책임 이행체제에 대량학살 가해자에 대한 형벌과 징계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규범으로 남을 수 있다. 재건축책임 이행 시 리비아 사태 관련 카다피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ICC로의 회부와 실제 처벌은 인권유린을 행하는 지도자들을 향한 압박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사태 분석을 통한 보호책임 이행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리비아 사태에서는 보호책임의 마지막 단계인 재건축책임이 완성되지 못했다. 물론 사태가 종료된 직후 국제공동체와 새 리비아 정부는 재건축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지만, 이는 리비아의 재건에 효과적이지 못했다. 과도정부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 현재 리비아는 두 개의 정부로 나뉘어 내전이 지속되고 있고, UNSMIL은 리비아 평화와 재건을 위한 해결책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대응책임 단계에서는 리비아에 대한 강제적 대응이 시행될 수 있었으나, 재건축책임 단계에서는 국제공동체에 의한 강제적 재건이 이행되기 힘들다는 현실적 한계도 확인할 수 있다. 리비아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재건의 달성까지를 목표로 하는 보호책임 규범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둘째, 리비아 사태는 주권국가의 의지 결여가 보호책임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었다. 국제공동체가 지원하려해도 주권국가에게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보호책임 이행 활동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리비아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보호책임의 이행이 각 국가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인도적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호책임 규범이 나타나기 전 인도적 개입은 일관성이 없고 개입국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으로 인해 지적을 받아왔다. 보호책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안된 개념이었으나 보호책임조차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리비아 사태를 통해 도출된 보호책임의 여러 한계들은 아직 보호책

임 규범이 인도적 개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보호책임은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사후 재건 과정을 통해 대응의 단계에만 치중하던 인도적 개입을 보완하고자 했으나, 리비아 사태에서 확인하듯 예방과 재건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보호책임 규범 역시 인도적 개입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수단과 명분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보호책임 규범은 각종 인권유린 사건을 언급할 때 하나의 명분과 수사적 용도로만 주로 활용될 뿐, 그것이 실제 이행체제에 따른 이행의 과정까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보호책임 규범의 지속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보호책임이 향후에도 설득력 있는 규범으로 남기 위해선 이행체제의 속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제 이를 적용하여 수행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즉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진실성 있고 효율적인 보호책임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담론의 지속과 실제 적용을 통해 보호책임 규범이 인도적 개입을 대신할 수 있는 규범으로 존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열수. 2008. “탈냉전 후 유엔 안보리의 위상변화 : 군사력 사용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제48집 1호, 349-374.
- 김현. 2013. “국민보호책임(R2P) 규범과 규범 촉진자.”『아태연구』제20권 제2호, 157-19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주요국의 리비아 사태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11-27, 1-2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KIEP 연구보고서』12-24.
- 모가미 도시키 저. 조진구 역. 2003.『인도적 개입-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서울: 소화.
- 박기갑 외. 2010.『국제법상 보호책임』. 서울: 삼우사.
- 박동형. 2012. “리비아에 대한 ‘보호책임(R2P)’적용 사례 연구: 북한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국제정치논총』제52집 3호, 287-312.
- 박유정. 2012. “카다피 사태 이후 재건 사업 관련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 확대.”『수은해외경제』, 59-63.
- 박정원. 2005. “민족분쟁과 인도적 개입의 국제정치: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인종청소를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23집 2호, 59-83.
- 박흥순. 2012. “유엔(UN)과 ‘보호책임’ 원칙의 실행.”『OUGHTOPIA』제27권 제2호, 71-115.
- 이규창 외. 2012.『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KINU 연구총서 12-03.
- 이수형. 2011. “리비아 사태와 NATO의 군사개입.” 리비아 사태 관련 정세 현안 진단 워크숍, 외교안보연구원.
- 인남식. 2011. “2011 아랍 정치변동의 성격과 함의.”『국제정치논총』제51집 4호, 237-254.
- 조정현. 2011.『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예의 함의』. 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4.
- 통일연구원. 2011.『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1.

- 홍미정. 2017. “1차 리비아 내전 연구: 국제사회와 국가과도위원회.”『한
국중동학회논총』38권 1호, 57-92.
- 황병하 외. 2011.『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Annan, Kofi. 2000.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General Assembly Official.
- _____. 2004.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Vol. 5, New York: UN.
- Arab League. 2011. Res.No.7360.
- Arbour, Louise. 2008.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s a duty of
care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4, No. 3, 445-458.
- AU Doc. 2011. PSC/PR/BR.1(CCLXVIII). (23 March).
- Bellamy, A. J. 2009. “Realiz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 10, No. 2, 111-128.
- Bellamy, A. J. & Williams, P. D. 2011. “The new politics of
protection? Côte d'Ivoire, Libya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ternational Affairs* Vol. 87, No. 4, 825-850.
- Evans, Gareth. 2012.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fter Libya
and Syria.” available at: [http://www.gevans.org/speeches/spe
ech476.html](http://www.gevans.org/speeches/speech476.html) (12 August).
- Glanville, Luke. 2012.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beyond
borders.” *Human Rights Law Review* Vol. 12, No. 1, 1-32.
- ICISS.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 Madsen, M. M. & Selsbæk, S. S. W. 2013.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the intervention in Libya.” Doctoral dissertation.
Roskilde University.

- O'Shea, Elizabet. 2012.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Libya: Ghosts of the Past Haunting the Futu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view* Vol. 1, No. 1, 173-190.
- UN Doc. 2011a. S/RES/1970. (26 February).
- _____. 2011b. S/RES/1973. (17 March).
- _____. 2011c. A/65/PV.76. (1 March).
- _____. 2011d. A/RES/65/265. (3 March).
- _____. 2011e. GA/11137. (16 September).
- _____. 2011f. A/HRC/S-15/1. (25 February).
- _____. 2011g. S/RES/2009. (16 September).
- _____. 2014. S/2014/131. (26 February).
- UNGA. 2005. "World Summit Outcome." *Final Document of the High-level Ple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 _____. 2009.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677.
- _____. 2010. *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64/864.
- _____. 2011.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65/877-S/2011/393.
- UNHRC. 2011.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der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S-15/*.
- _____. 2012. *Report of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Libya*.
- UNSG. 2005.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New York: UN.

투고일 : 2019년 12월 17일 . 심사일 : 2020년 1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월 24일

* 오지혜는 충북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국제레짐, 인권레짐, 국제개발 등이 있다.

* 김일수는 Miami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미국외교정책, 동북아 안보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정책: 쟁점 및 전망”(『정치정보연구』2019. 2), “트럼프 행정부 핵 비확산 정책과 한반도 평화”(『국제정치연구』2017. 12), “이슬람국가(IS)의 위협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전략 함의”(『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7. 2) 등이 있다.

<Abstract>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Libya :
Problems and Prospects**

Oh, Ji-hy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im, Il-s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vened in the nam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counter new types of security threats, but humanitarian intervention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of sovereign s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ed new nor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emerged at that time as a concep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This paper aims to apply the 2011 Libyan situation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2P to review the actual process and analyze the factors for the implementation results. To this end, we will go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R2P, and look at how the R2P has been applied in the Libyan crisis.

Keywords : R2P, Lybia, responsibility to prevent, responsibility to react, responsibility to rebuild